



일본 건설관련 정부조직의 편제

정보신청기관 : 대한건축사협회

I. 건설관련 정부조직법제의 개요

일본의 건설관련 정부조직은 1948년 1월에 내무성(內務省) 국토국(國土局)의 업무를 인수하여 출발한 건설원(建設院)으로부터 시작된다. 1949년에는 ‘건설성설치법’(1948년 7월 8일 법률 제 113호로 제정)에 따라 건설원이 건설성(建設省)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.

건설성은 2001년 1월 5일까지 존재하였다. 하부조직으로는 건설경제국, 도시국, 하천국, 도로국, 주택국을 두었다. 특별기관으로 국토지리원을 두었고, 시설 등 기관으로 토목연구소, 건축연구소, 건설대학교를 두었다. 각 지방의 건설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호쿠(東北), 간토(關東), 호쿠리쿠(北陸), 주부(中部), 긴끼(近畿), 주우고쿠(中國), 시코쿠(四國), 규슈(九州)에 지방건설국을 두었다.

일본국은 내각기능의 강화, 국가행정기관의 재편성, 국가행정조직과 사무 및 사업의 감량·효율화 등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12일에 ‘중앙성청 등 개혁 기본법’을 공포하였다. 1999

년 7월 16일에 법률 제100호로 ‘국토교통성 설치법’이, 법률 제102호로 ‘중앙성청 등 개혁을 위한 국가행정조직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’이 공포되었다. 같은 해 12월 22일에는 ‘중앙성청 등 개혁관계법 시행법’(법률 제160호)이 공포되었다. 이러한 법률에 따라 1부 22성청으로 되어 있던 방만한 정부조직이 1부 12성청으로 대폭 감축되었다.

구 건설성을 비롯하여 운수성, 국토청, 홋카이도개발청이 조직·통합되어 국토교통성(國土交通省)으로 개편되었고, 2001년 1월 6일에 설치되었다. 개편에 따라 기존의 각 국과 기관들도 새로운 부서로 조직·통합되었다. 건설경제국은 구 운수성 운수정책국과 함께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으로 되었다. 도시국은 구 국토청 지방진흥국 등과 함께 국토교통성 도시·지역정비국으로 되었다. 시설 등 기관인 토목연구소는 2001년 4월에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가 발족한 후, 독립행정법인 토목연구소로 변경되었다. 건축연구소도 독립행정법인 건축연구소로 변경되었다. 건설대학교는 구 운수성 운수연구소와

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.

특별기관으로 국립지리원과 소립원종합사무소를 두고 있다. 각 지방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지분부국으로 지방정비국, 홋카이도개발국, 지방운수국, 지방항공국, 항공교통관제부를 두고 있다. 외국(外局)으로 선원노동위원회, 기상청, 해상보안청, 해난심판청을 두고 있다. 시설등기관으로 국토교통정책연구소,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, 국토교통대학교, 항공보안대학교를 두고 있다.

Ⅲ. 국토교통성 내 건설관련 조직의 임무

국토교통성은 국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용,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사회자본의 정합적인 정비, 교통정책의 추진, 기후업무의 건전한 발달 및 해상 안전과 치안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(국토교통성 설치법 제3조).

구 건설성의 사무를 다루고 있는 종합정책국, 도시·지역정비국, 하천국, 도로국, 주택국, 지방정비국과 홋카이도개발국의 소관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1. 종합정책국

종합정책국에서는 국토교통성의 소관사무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방침과 기타 정책의 기획 및 입안, 당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성의 소관사무의 총괄하는 업무를

담당한다(국토교통성 조직령 제4조 제1호).

2. 도시·지역정비국

도시·지역정비국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(국토교통성 조직령 제7조).

- 대도시의 기능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과 입안의 추진에 관한 것(국토계획국과 정책통괄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),
- 수도권정비계획, 근기권(近畿圈)정비계획 및 중부권개발정비계획의 추진에 관한 것,
-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특정지역의 정비 및 개발을 위한 대규모사업(수도권과 기타 각 대도시권내에서 행하는 것에 한함)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사무조정에 관한 것,
- 수도권의 기성시가지 및 근기권의 기성도시구역에서의 산업과 인구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,
- 수도권근교 정비지대 및 도시개발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(1958년 법률 제98호)과 근기권근교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의 정비와 개발에 관한 법률(1964년 법률 제145호)에 규정된 처분관리계획에 관한 것,
- 대심도(大深度)지하의 공공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관한 것(정책통괄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),
- 국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용,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, 지역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과 그 추진에 관한 것,
- 호설지대(豪雪地帯)(호설지대대책특별조치법(1962년 법률 제73호) 제2조 제1항에서 규정

하고 있는 호설지대를 말함. 이하 같음)의 설해방제와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과 입안 및 그 추진에 관한 것,

-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과 재해위험지역의 주거에 대한 집단적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의 원조 및 조성에 관한 것,

-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것,

- 경관법(2004년 법률 제110호)의 규정에 의한 양호한 경관 형성에 관한 것(지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),

- 택지조성 등 규제법(1961년 법률 제191호)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 등 규제에 관한 것,

-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것(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 행하는 업무에 관한 것과 토지·수자원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),

- 민간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(항만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),

- 시가지재개발사업, 유통업무단지조성사업과 기타 시가지의 정비개선에 관한 것(방재가구 정비사업과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 행하는 업무에 관한 것, 주택국과 항만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),

- 방재가구 정비사업(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방재도시시설(밀집시가지에서의 방재가구의 정비·촉진에 관한 법률(1997년 법률 제49호)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도시시설을 말함. 이하 같음)의 정비에 수반된 것에 한함)의 조성 및 감독에 관한 것,

-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 행하는 업무에 관한 것,

- 주차장에 관한 것(도로국과 자동차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),

- 도시개발자금대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에 관한 것(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 행하는 택지조성과 토지구획정리사업(택지의 조성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병행하여 행하는 것에 한함)에서 요하는 자금의 대부에 관한 것과 종합정책국 및 주택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),

- 도시공원과 기타 공공공지(空地) 및 보승지(保勝地)의 정비와 관리(皇居外苑, 新宿御苑 및 京都御苑에 관해서는 그것의 정비에 한함)에 관한 것,

- 도시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것,

- 시민농원의 정비·촉진에 관한 것,

- 옥외광고물에 관한 것,

- 古都(明日香村을 포함)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과 입안 및 그 추진에 관한 것,

- 하수도에 관한 것,

- 도시개발자금융통특별회계의 경리에 관한 것,

- 소립원(小笠原)종합사무소의 기구와 정원 및 운영상 요하는 경비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연락조정에 관한 것,

- 소립원종합사무소의 사무·운영·지도 및 개선에 관한 것.

3. 하천국

하천국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(국토교통성

조직령 제8조).

- 하천·수류 및 수면(항만 내의 수면은 제외)의 정비, 이용, 보전 기타 관리에 관한 것,
- 수자원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것,
- 유역에서의 치수(治水)와 수리에 관한 시책의 기획, 입안과 추진에 관한 것,
- 공유수면(항만 내의 공유수면은 제외)의 매립과 간척에 관한 것,
- 운하(항만 내의 운하는 제외)에 관한 것,
- 사방에 관한 것,
- 지활(地滑), 경산(硬山) 및 급경사의 붕괴와 눈사태로 인한 재해방지에 관한 것,
- 해안의 정비, 이용, 보전 기타 관리에 관한 것(항만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),
- 수방에 관한 것,
- 국토교통성의 소관에 관계된 공공토목시설(항만, 항만에 접한 해안, 하수도 및 공원을 제외. 제102조 제1호와 부칙 제4조 및 제14조의 2의 경우도 동일)에 관한 재해복구사업의 지도(도로와 관계되어 있는 공사 지도는 제외), 감독 및 조성에 관한 것,
- 공공토목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사무의 연락·조정에 관한 것,
- 재해대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방재업무계획의 책정,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진방재강화계획의 책정, 기타 방재에 관한 사업으로 국토교통성의 소관과 관계된 사무의 총괄에 관한 것(종합정책국의 소관사무는 제외),

- 지방공공단체등에서 위탁한 사무(제1호, 제2호, 제5호~제8호)와 관련된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경우에는 공사 관리를 행하는 것, 치수특별회계의 경리에 관한 것.

4. 도로국

도로국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(국토교통성 조직령 제9조).

- 도로의 정비, 이용, 보전 기타 관리(이것들과 관련된 환경대책 및 교통안전대책을 포함)에 관한 것(재해복구사업의 지도 중 공사 지도 이외의 것과 재해복구사업의 감독 및 조성에 관한 것은 제외),
- 유료도로에 관한 사업에 관한 것,
- 궤도법((軌道法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의 인가,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수 및 준공기간의 지정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집행에 관한 것,
-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위탁한 사무(국토교통성 조직령 제9조 제1호의 사무)와 관련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경우에는 공사 관리를 행하는 것,
- 도로정비특별회계의 경리에 관한 것,
-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일본고속도로보유·채무반환기구분과회의 서무에 관한 것.

5. 주택국

주택국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(국토교통성 조직령 제10조).



- 주택(부대시설을 포함)의 공급, 건설, 개량 및 관리와 그 거주환경의 정비에 관한 것,
-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가 행하는 업무에 관한 것(토지·수자원국과 도시·지역정비국의 소관사무는 제외),
-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가 행하는 자금의 융통, 대부채권의 양수, 채무의 보증과 주택융자보험에 관한 것(토지·수자원국의 소관사무는 제외),
- 재해지역의 토지와 건물의 권리 보전에 관한 것,
- 건축물(정화조 포함) 기준에 관한 것, 건축사에 관한 것,
- 건축물의 질 향상과 기타 건축의 발달 및 개선에 관한 것,
- 방재가구(防災街區)정비사업에 관한 것(도시·지역정비국의 소관사무는 제외),
- 개인시행사, 시가지재개발조합, 방재가구계획정비조합, 재개발회사,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및 지방주택공급회사가 시행하는 시가지재개발사업(도시계획에서 정한 중요한 공공시설의 정비를 수반하는 것은 제외)의 조성과 도시재개발법(1969년 법률 제38호)에 따른 감독에 관한 것,

-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가 행하는 건축물의 부지정비(임대주택의 건설과 함께 행하는 것과 중요한 공공시설의 정비를 수반하는 것에 한함) 조성에 관한 것,
-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도시재생기구분과회와 주택금융지원기구분과회의 사무에 관한 것.

6. 지방정비국과 홋카이도개발국

구 건설성 하의 8개의 지방건설국이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으로 개편되었다. 각 지방정비국은 국토교통성 소관사무 중 국토교통성 설치법 제31조 제1항 각호에 기재된 사무(홋카이도구역과 관계된 것은 제외)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장한다(국토교통성설치법 제31조 제1항).

국토교통성 소관사무 중 홋카이도구역과 관계된 것은 홋카이도개발국에서 담당한다(국토교통성설치법 제33조 제1항).

김수용
(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)